

제234회 영등포구의회  
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 
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고기판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1. 11. 23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417호로 2021년 11월 15일 고기관·윤준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('19. 3. 28)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,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3조)
- 나.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조례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 삭제 (안 제10조)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입법예고 (2021. 11. 12. ~ 11. 16. / 5일 간)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 ('19. 3. 28)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는 조문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으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을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10조에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시 보훈수당(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)을 받는 보훈대상자에게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.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## 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와 자치구 보훈예우수당 간 중복지급 금지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게도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우리구 조례에서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.
- 검토결과,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가. 관련조례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조례개정: 제10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
-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중복금지 조항 삭제 (안 제10조 제2항)
  - 서울시 보훈수당(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)을 받는 보훈대상자도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개정

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
- 지급대상: 2,200명 ⇒ 3,600명(市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1,220명, 생활보조 수당 지급대상자 180명 추가)
- 나. 월 4만원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비용추계
- 2022년 1만원 인상(2021년 3만원 ⇒ 2022년 4만원)

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지급대상자 추가 비용 추계 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세출 (구비)	지급예상인원	1,400	1,400	1,400	1,400	1,400
	1인 지급액	40	40	40	40	40
	1인 년 지급액	480	480	480	480	480
	예산소요액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

나. 지급대상 확대지급시(기존+신규 추가) 비용 추계 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세출 (구비)	지급예상인원	3,600	3,550	3,500	3,450	3,400
	1인 지급액	40	40	40	40	40
	1인 년 지급액	480	480	480	480	480
	예산소요액	1,728,000	1,704,000	1,680,000	1,656,000	1,632,000

※ 연도별 지급예상인원은 3년간 사망위로금 지급 인원 평균으로 산출

4. 작성자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박종무(2670-3387)

# 참 고 자 료

## 1 국가보훈 기본법

- 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예우 및 지원의 원칙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**제19조(예우 및 지원)**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5조(참전명예수당)**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3.28>

-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.
-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타 시·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, 신규 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.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(남부·북부 보훈지청장 포함)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.
-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